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송등에서 거짓정보 제공 약사한약사 자격정지〉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288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9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1. 6.

(3) 회 부 일 : 2024. 11.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의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의료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식품의 효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고, 곧이어 해당 식품의 광고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의약품등에 대해서만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에 대한 광고 외에는 특별히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8조의13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약사 및 한약사가 방송,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매체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사·한약사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13 및 제79조제3항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절 <u>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u> <신 설>	제6절 <u>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u> 제68조의13(거짓 정보 제공 금지) ① <u>약사 및 한약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 <u>방송법</u> 」 제2조제1호 ¹⁾ 에 따른 <u>방송</u> 2. 「 <u>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제2호 ²⁾ 에 따른 <u>신문·인터넷신문</u> 3. 「 <u>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 ³⁾ 에 따른 <u>정기간행물</u>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④ ~ ⑥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및 한약사가 제1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기준, 방법 및 협조의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68조의13을 위반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2. 검토의견

- 약사 및 한약사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관련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시청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사 및 한약사의 전문성·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게 될 것으로 우려됨.
- 현행법은 ‘의약품등(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광고’에 대하여 명칭·제조방법·효능 또는 성능에 관하여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 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등을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 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는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금지하고,⁴⁾ 온라인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를 금지하면서,⁵⁾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⁶⁾

- 4)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와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전문매체에 광고하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의 광고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5) 「약사법」 제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되고,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1.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
 3.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에 따라 지정된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결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통보 결과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6) 「약사법」 제9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60조(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또는 제68조를 위반한 자
 10의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윤리 기준 위반의 사유로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약사(藥事)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⁷⁾

약사 또는 한의사가 의약품등의 광고가 아닌 형태로 방송 등에 출연하여 건강관리 및 식품의 효능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최근 10년간 방송 등에서의 거짓 정보 제공의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⁸⁾
- 참고로, 의료인 또는 약사가 방송에 출연하여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 허위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을 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42조(의료행위 등)⁹⁾ 위반으로

7)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8) 보건복지부

9)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내용

2.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는 내용 또는 이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

3. 위험성·부작용 등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내용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4년 11월 현재까지 총 223건으로 나타난 바 있음.¹⁰⁾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위반 심의제재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11	합계
지상파	8	5	0	1	1	14	0	2	1	0	32
라디오	2	4	0	2	0	1	0	0	0	0	9
종편보도	24	11	0	0	1	2	0	2	3	0	43
전문편성	30	31	6	9	14	1	11	20	13	3	138
홈쇼핑	0	0	0	0	0	1	0	0	0	0	1
합 계	64	51	6	12	16	19	11	24	17	3	223

주: 의료인·약사 등 출연자의 직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위반 심의제재 현황을 분류함.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시청자 등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건강관리 등에 대한

4. 질병 등에 관하여 시청자를 지나치게 불안하게 하는 내용
 5.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 등을 비교하여 효과를 과장하는 내용
 7.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
 8. 특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된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는 내용
 - ② 방송은 의료행위 등을 목적으로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만으로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시청자가 증상에 따른 상담결과를 확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 중 실시간 의학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가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 또는 약사(藥師)를 선정할 때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자격과 전문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의료인 또는 약사를 소개할 때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력·전문 과목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공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방송은 의료행위·약품, 식품·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 등과 관련한 특정인의 사례를 소개할 때에는 시청자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자막 또는 음성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10)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의 준수여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제재 사례가 모두 개정안의 거짓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거짓정보 제공 금지를 약사 및 한약사의 준수사항과 자격정지 사유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책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¹¹⁾의 심의 내역 등을 모니터링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안 제68조의13은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하여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금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므로 제6장(의약품등의 취급) 중 제6절(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규정하기 보다는 제5절(의약품등의 광고)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및 한약사가 거짓 정보 제공 금지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절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¹²⁾,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외에 미디어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주요 언론자율규제기구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1961년 출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1991년 출범), 인터넷신문위원회(2012년 출범)가 있음.

12) 개별 조항에 위탁규정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제67조에 따른 단체(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조직한 사단법인)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만 위탁할 수 있음.

「약사법」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관계 기관 뿐 아니라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대상의 범위를 ‘관계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약사 또는 한약사가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함으로써,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 약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위반 시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통하여 제재 가능하므로, 거짓정보 제공 관련 윤리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 조항 신설보다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 등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 인지 여부는 결국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대한약사회가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의 자격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약사·한약사의 거짓 정보제공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모든 매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있어 실행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2) 대한약사회(수정수용)

- 허위나 과장된 건강정보를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유포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나, 기존 조항(법 제61조의2 및 제61조의3)과의 관계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율규제(법 제67조의2) 조항에 구체적인 규율 대상 및 징계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함.

3) 대한한약사회(수용곤란)

- 한약사와 약사는 국가가 인정한 보건의료직능으로서 국민보건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방송을 통해 특정 제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공감하나, 해당 한약사 등이 제공한 정보가 명백한 거짓이라고 판명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이상 이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4) 대한의사협회(반대)

-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의 정의가 모호하고 판단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규제가 가해질 경우 약사·한약사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고, ‘거짓’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별로 전문가의 자문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안은 법안과 같이 법적 제재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가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여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문제발생을 예방·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5) 한국방송협회(반대)

□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는 약사 및 한약사가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의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문제가 되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담당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권을 발동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친근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 등의 방송출연 의사를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시청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차단하는 부작용만 낳게 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494